 <b>질병관리청</b>		<b>보도참고자료</b>	
배 포 일	2021. 1. 19. (총 31매)	담당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조 우 경	전 화	043-719-7680
담당자	최 상 미, 최 은 경		043-719-936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1명,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3,115명(해외유입 5,98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3,10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9,596건(확진자 4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2,702건, 신규 확진자는 총 386명이다.
  -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745명으로 총 59,468명(81.3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36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35명,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83명(치명률 1.75%)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9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51	95	17	15	18	7	5	3	128	16	5	7	2	6	8	11	1	
누계	67,135	21,984	2,334	8,059	3,395	1,348	910	825	148	17,107	1,508	1,398	1,789	903	607	26,84	1,666	470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9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주최)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35	0	12	3	17	3	0	8	27	18	17		
누계	5,980	34	2,752	1,024	1,932	216	22	2,618	3,362	3,265	2,715		
		(0.6%)	(46.0%)	(17.1%)	(32.3%)	(3.6%)	(0.4%)	(43.8%)	(56.2%)	(54.6%)	(45.4%)		

\* 아시아(중국 외) : 미얀마 1명, 러시아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 이라크 1명(1명), 파키스탄 3명(2명), 스리랑카 3명, 유럽 : 영국 1명(1명), 프랑스 1명, 독일 1명, 아메리카 : 미국 16명(11명), 브라질 1명, 아프리카 : 가나 1명, 세네갈 1명(1명), 캄보디아 1명 \* 경로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8(월) 0시 기준	58,723	12,742	343	1,264
1.19(화) 0시 기준	59,468	12,364	335	1,283
변동	(+745)	(-378)	(-8)	(+19)

\* 1월 18일 0시부터 1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요유입(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ECMO)제외(산소공급), CRRT(지속적신폐쇄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19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19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351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68.3명), 수도권에서 241명(68.7%) 비수도권에서는 110명(31.3%)이 발생하였다.

(주간 : 1.13일~1.19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19일(0시 기준)	351	241	22	15	23	33	16	1
주간 일 평균	468.3	310.7	22.6	25.1	31.3	62.7	14.3	1.6
주간 총 확진자 수	3,278	2,175	158	176	219	439	100	11

- 수도권

(주간 : 1.13일~1.19일, 단위 : 명)

구분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57	317	325	341	350	244	241	310.7	2,175
서울	148	131	122	148	142	128	95	130.6	914
인천	20	24	23	30	35	13	18	23.3	163
경기	189	162	180	163	173	103	128	156.9	1,098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 격리자 추적검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23명이다.

구분	계	중사자	수용자	가족	지인
1.16일 누계	1,221	27	1,173	20	1
금일 누계	1,223(+2)	27	1,175(+2)	20	1

\* 10차 전수검사 결과(1.17) : 동부구치소 수용자 1명, 영월교도소 수용자 1명



- (서울 은평구 병원3 관련) 1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4명
- (서울 서대문구 교회 기도처 관련) 1월 16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교인 8명(지표포함), 가족 8명(+1), 지인 1명
- (경기 안양시 복지시설 관련) 1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종사자 3명(지표포함), 이용자 3명, 가족 4명
- (경기 수원시 복지시설 관련) 1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지표환자(종사자의가족), 종사자 1명, 이용자 7명, 이용자의가족 1명
- (경기 성남시 전통시장 관련) 1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구분) 손님 5명(지표포함), 상인 4명, 가족 9명, 기타 2명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 1월 15일 이후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0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가족	지인
전일 누계	90	70	18	2
금일 누계	100(+10)	77(+7)	21(+3)	2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 1월 16일 이후 격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수지구 교회	193(+7)	교인 143명(지표포함, +2), 가족 12명(+2), 기타 38명(+3)
② 직장1	11	동료 9명, 가족 2명
③ 직장2	12	동료 10명, 가족 2명

○ 호남권

(주간 : 1.13일~1.19일, 단위 : 명)

구분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10	39	24	36	34	18	15	25.1	176
광주	3	30	5	6	14	11	7	10.9	76
전북	7	3	6	17	5	3	2	6.1	43
전남	-	6	13	13	15	4	6	8.1	57

- (전남 영암군 농장 관련) 1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구분) 종사자 3명(지표포함), 가족 3명 (지역) 전남 3명, 광주 3명

○ 경북권

(주간 : 1.13일~1.19일, 단위 : 명)

구분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35	27	31	42	30	31	23	31.3	219
대구	13	11	10	23	15	13	15	14.3	100
경북	22	16	21	19	15	18	8	17.0	119

- (경북 포항시 은행 관련) 1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3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주간**(1월 10일 0시~1월 16일 0시)의 **확진자 발생상황**을 설명하였다.
  - '21년 1월 3주차(21.1.10.~21.1.16.)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3,822명**이며, **지난 2주차**(21.1.3.~21.1.9.) 5,413명 대비 **1,519명 감소(29%)**하였다.
    - 이 중 **병원·요양병원** 관련이 **341명**으로 **이전 주 578명 대비, 41%(23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확진자 중 **확진자 접촉 감염**은 43.1%(1,649명)로 2주차 **39.3%(2,125명) 대비 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환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 감염 증가,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계절적 요인 등 재유행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설명하였다.
  - '20년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지속 중인 이번 **3차 유행**은 **12월 중순 정점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이나,
    - 현재의 유행 양상은 △**감염취약시설** 및 △**대규모 집단발생**은 감소하는 반면, △**확진자 접촉**에 의한 **발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 \* **34.8%**(21년 52주)→**36.2%**(21년 1주)→**39.3%**(21년 2주)→**43.1%**(21년 3주)
    - 이에 따라, **가족·지인·동료** 등 **일상 속 접촉**에 의한 **개인 간 감염이 언제든지 집단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국제적 위협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동거가족 전파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더욱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며,
  - **호흡기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낮은 기온**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 방역 당국은 **해외 변이 바이러스 모니터링, 병원체 분석**에 대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 현재의 **감소세를 더욱 낮추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가정·직장 등 일상에서의 거리두기**를 **충실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 그간 방역 당국은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오고 있으며,
    - \* 모든 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입국 후 및 격리해제 전 검사 모두 실시, 영국·남아공·브라질 發 입국자에 대한 발열기준 강화 (37.5℃→37.3℃), 영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20.12.23~'21.1.21) 등
    - **1월 18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진단검사 주기를 1일 이내**(당초 3일 이내)로 단축하여 **변이 바이러스 감시·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영국·미국 항공편 운항 중단은 1월 28일까지 1주간 연장 (당초 ~1.21)하고, 1월 25일부터 브라질 입국자의 방역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 브라질 發 입국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 브라질 發 입국자(내·외국인 모두 해당)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음성 확인 시까지 동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또한, 브라질 發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하는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실시(14일, 입소비용은 본인부담), △외국인은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發 입국자는 기 시행 중(1.12~)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시기라며, 1월 말까지 연장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변함없이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하며,
- 국민들께 중요한 세 가지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제차 당부하였다.
  - 첫째,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다.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 아울러, 국민들의 힘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및 경남 진주시 소재 기도원 방문자와 방문자의 접촉자 등은 조속히 검사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환자 및 검사자 현황(1.18. 18시 기준) >

구분	대상/관련	양성자
합 계		784명(+21)
방문 추정자	3,003명	262명(+14)
추가 전파	9개 시도*	522명(+7)

\*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부산, 전남  
※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5.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
6.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2.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3.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5.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6.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7.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8.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9.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0.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1.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6.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7.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민용]
18.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 **일일 확진자 현황 (1.19. 0시 기준, 73,1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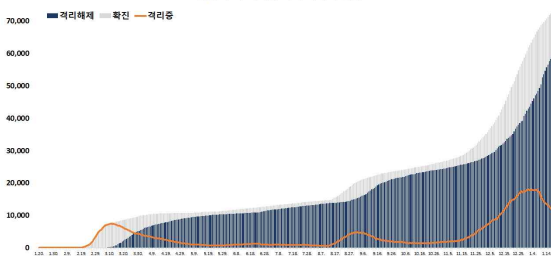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1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18.(월) 0시 기준	5,087,220	72,729	58,723	12,742	1,264	158,035	4,856,456
1.19.(화) 0시 기준	5,140,326	73,115	59,468	12,364	1,283	154,345	4,912,866
변동	+53,106	+386	+745	-378	+19	-3,690	+56,410

\* 1월 18일 0시부터 1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일일 누적 격리중·격리 해제자 현황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1.19. 0시 기준, 73,115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95	6	22,717	(31.07)	233.39
부산	17	0	2,442	(3.34)	71.57
대구	15	1	8,176	(11.18)	335.56
인천	18	1	3,580	(4.90)	121.10
광주	7	1	1,452	(1.99)	99.68
대전	7	0	957	(1.31)	64.92
울산	5	3	900	(1.23)	78.46
세종	3	0	172	(0.24)	50.24
경기	128	11	18,378	(25.14)	138.70
강원	16	1	1,562	(2.14)	101.39
충북	5	0	1,478	(2.02)	92.41
충남	7	1	1,918	(2.62)	90.37
전북	2	1	995	(1.36)	54.75
전남	6	0	669	(0.91)	35.88
경북	8	1	2,803	(3.83)	105.28
경남	11	0	1,798	(2.46)	53.49
제주	1	0	500	(0.68)	74.54
검역	0	8	2,618	(3.58)	-
총합계	351	35	73,115	(100)	141.02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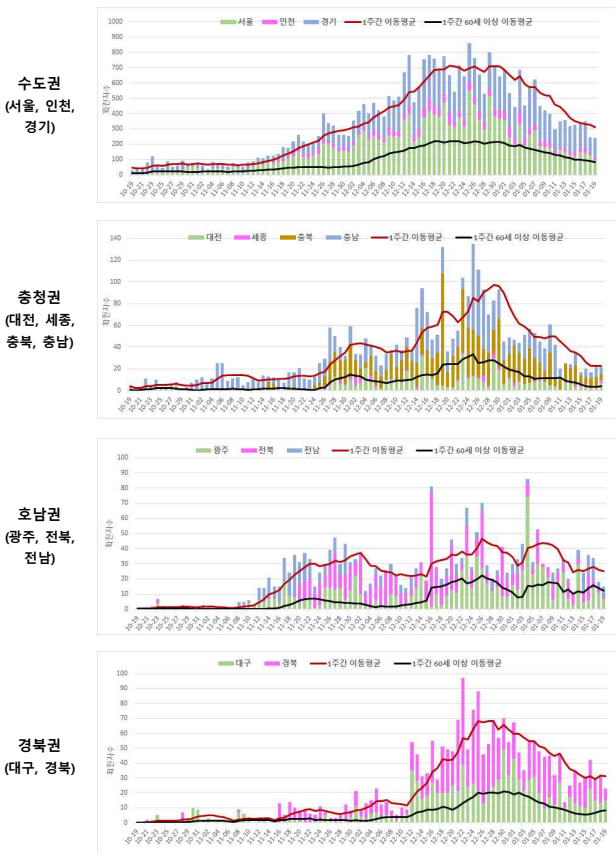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중	격리해제	사망	격리중	격리해제	사망	격리중	격리해제	사망	격리중	격리해제	사망	격리중	격리해제	사망	격리중	격리해제	사망	격리중	격리해제	사망	격리중	격리해제	사망	격리중	격리해제	사망	격리중	격리해제	사망	격리중	격리해제	사망	격리중	격리해제	사망		
격리 중	12,364	4,953	463	183	525	225	79	140	16	3,447	263	329	221	111	108	250	303	24	724																				
격리해제	59,468	17,487	1,894	7,787	3,011	1,214	866	724	155	14,538	1,272	1,103	1,667	850	555	2,489	1,488	476	1,892																				
사망	1,283	277	85	206	44	13	12	36	1	393	27	46	30	34	6	64	7	0	2																				
합계	73,115	22,717	2,442	8,176	3,580	1,452	957	900	172	18,378	1,562	1,478	1,918	995	669	2,803	1,798	500	2,618																				

\* 1월 18일 0시부터 1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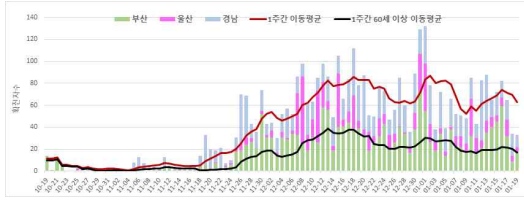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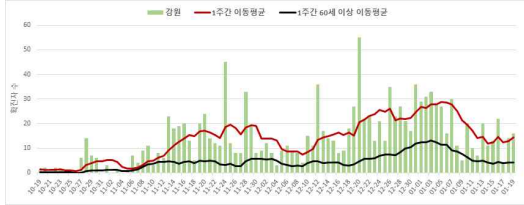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③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19. 0시 기준, 73,115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386 (100)	73,115 (100)	141.02
성별	남성 197 (51.04)	35,861 (49.05)	138.66
	여성 189 (48.96)	37,254 (50.95)	143.37
연령	80세 이상 8 (2.07)	3,647 (4.99)	192.03
	70-79 31 (8.03)	5,684 (7.77)	157.58
	60-69 43 (11.14)	11,519 (15.75)	181.57
	50-59 73 (18.91)	13,750 (18.81)	158.65
	40-49 72 (18.65)	10,483 (14.34)	124.96
	30-39 58 (15.03)	9,361 (12.80)	132.87
	20-29 52 (13.47)	11,295 (15.45)	165.95
	10-19 27 (6.99)	4,661 (6.37)	94.34
	0-9 22 (5.70)	2,715 (3.71)	65.44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④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19.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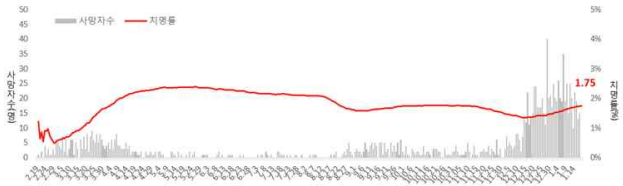
구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9 (100)	1,283 (100)	1.75
성별	남성 9 (47.37)	633 (49.34)	1.77
	여성 10 (52.63)	650 (50.66)	1.74
연령	80세 이상 10 (52.63)	725 (56.51)	19.88
	70-79 5 (26.32)	352 (27.44)	6.19
	60-69 3 (15.79)	151 (11.77)	1.31
	50-59 1 (5.26)	40 (3.12)	0.29
	40-49 0 (0.00)	9 (0.70)	0.09
	30-39 0 (0.00)	6 (0.47)	0.06
	20-29 0 (0.00)	0 (0.00)	0.00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계	411	400	404	409	401	395	390	374	380	374	360	352	343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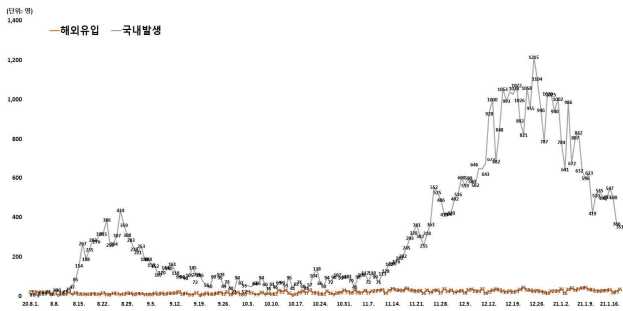
구분	위중증	( % )
계	335	( 100.0 )
80세 이상	68	( 20.3 )
70-79세	135	( 40.3 )
60-69세	96	( 28.7 )
50-59세	25	( 7.5 )
40-49세	6	( 1.8 )
30-39세	3	( 0.9 )
20-29세	2	( 0.6 )
10-19세	0	( 0.0 )
0-9세	0	( 0.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폐쇄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감염경로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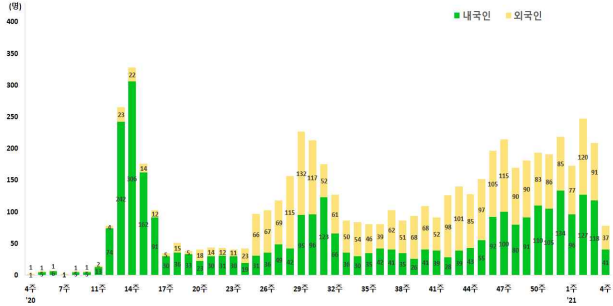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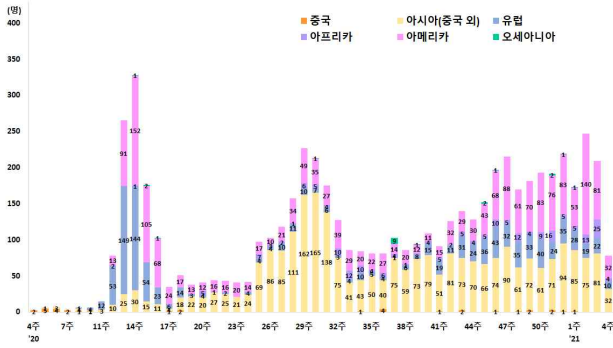


< 최근 2주간 (21.1.6일 0시~21.1.19일 0시까지 신고된 8,139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누계	해외유입	확진환자(단위: 명, %)				조사중	신규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집단발생 소계	신전지 관련	집단 발생	해외유입 관련				
서울	22,717	733	8,330	8	8,235	87	7,728	5,926	101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9명, 경기 36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덴스그룹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3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랑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부산	2,442	108	1,415	12	1,348	55	599	320	17	
대구	8,176	117	6,038	4,512	1,519	7	1,137	884	16	
인천	3,580	185	1,694	2	1,683	9	1,119	582	19	
광주	1,452	104	1,067	9	1,052	6	162	119	8	
대전	957	47	464	2	461	1	290	156	7	
울산	900	75	637	16	617	4	120	68	8	
세종	172	24	74	1	72	1	43	31	3	
경기	18,378	1,271	6,771	29	6,668	74	6,521	3,815	139	
강원	1,562	54	861	17	843	1	428	219	17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4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23명)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26명) • 경기 이천시 유휴시설 관련(125명)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16명)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94명)
충북	1,478	80	780	6	767	7	391	227	5	• 충북 고영동(고영동)산악회 관련(88명)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충남	1,918	129	941	0	940	1	516	332	8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7명)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3명)
전북	995	92	672	1	670	1	139	92	3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49명)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13명)
전남	669	62	454	1	451	2	93	60	6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5명) • 경북 상주 BT/발명센터 관련(784명)
경북	2,803	119	1,941	565	1,376	0	461	282	9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65명)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7명)
경남	1,798	132	1,073	32	1,016	25	356	237	11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05명)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89명)
제주	500	30	287	0	286	1	118	65	1	
검역	2,618	2,618	0	0	0	0	0	0	8	
합계	73,115	5,980	33,499	5,213	28,004	282	20,221	13,415	386	
(%)		(8.2)	(45.8)	(7.1)	(38.3)	(0.4)	(27.7)	(18.3)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서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6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19.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소 수 (개소) <sup>1)</sup>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 <sup>2)</sup>	
신규	-14	19,596	19,522	0	73	1	49
서울	-4	9,126	9,074	0	51	1	32
경기	-5	9,051	9,030	0	21	0	16
인천	-5	1,419	1,418	0	1	0	1
누계	130	1,180,695	1,162,354	4,235	14,063	43 <sup>3)</sup>	3,555
서울	52	571,373	566,153	1,485	3,720	15	1,852
경기	70	508,656	495,792	2,719	10,118	27	1,427
인천	8	100,666	100,409	31	225	1	276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27건, 음성 15건, 진행 중 1건

7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13.~1.19.)

구분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주간누계	총 누계
계	92,392	87,625	84,389	87,806	45,836	37,980	72,702	508,730	6,321,02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 <sup>1)</sup>	58,227	53,047	52,715	54,196	29,020	25,930	53,106	326,241	5,140,326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건) <sup>2)</sup>	34,165	34,578	31,674	33,610	16,816	12,050	19,596	182,489	1,180,695
신규 확진자 수(명)	561	524	512	580	520	389	386	3,472	73,115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명) <sup>3)</sup>	110	50	60	84	124	67	49	544	3,555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 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67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미국	23,556,676	392,641	212,253	3,557	1.67	7,116.82
인도	10,571,773	152,419	13,788	145	1.44	766.07
브라질	8,455,059	209,296	61,567	1,050	2.48	3,976.98
러시아	3,591,066	66,037	22,857	471	1.84	2,461.32
영국	3,395,963	89,261	38,598	671	2.63	5,001.42
프랑스	2,863,613	69,894	16,642	141	2.44	4,385.32
이탈리아	2,381,277	82,177	12,544	377	3.45	3,936.00
스페인 <sup>1)</sup>	2,211,967	53,079	-	-	2.40	4,726.43
독일	2,040,659	46,633	7,141	214	2.29	2,435.15
콜롬비아	1,891,034	48,256	20,855	388	2.55	3,715.19
아르헨티나	1,791,979	45,295	8,932	68	2.53	3,964.56
멕시코	1,630,258	140,241	20,523	1,219	8.60	1,264.75
터키	1,572,763	23,997	6,436	165	1.53	1,865.67
폴란드	1,438,914	33,407	3,332	52	2.32	3,806.65
남아프리카공화국	1,337,926	37,105	12,267	254	2.77	2,256.20
이란	1,330,411	56,803	6,016	86	4.27	1,583.82
우크라이나	1,163,716	20,869	3,034	67	1.79	2,662.97
페루	1,060,567	38,770	4,544	116	3.66	3,213.84
네덜란드	912,554	13,006	5,622	43	1.43	5,336.57
인도네시아	907,929	25,987	11,287	220	2.86	331.97
체코	891,852	14,449	2,693	111	1.62	8,335.07
캐나다	702,183	17,865	6,476	136	2.54	1,862.55
루마니아	693,644	17,221	2,156	57	2.48	3,612.73
벨기에 <sup>2)</sup>	678,839	20,435	1,630	39	3.01	5,852.06
스웨덴 <sup>3)</sup>	523,486	10,323	-	-	1.97	5,183.03
일본	328,294	4,501	5,998	55	1.37	259.52
카자흐스탄 <sup>4)</sup>	215,947	2,956	2,092	71	1.37	1,148.65
말레이시아	158,434	601	3,339	7	0.38	488.99
중국	88,454	4,635	118	0	5.24	6.15
키르기스스탄	83,178	1,387	69	3	1.67	1,279.66
우즈베키스탄	78,036	619	68	0	0.79	232.94
싱가포르	59,113	29	30	0	0.05	1,001.92
호주	28,708	909	19	0	3.17	112.58
태국	12,423	70	369	0	0.56	17.80
베트남	1,537	35	0	0	2.28	1.58
대한민국	73,115	1,283	386	19	1.75	141.06

\* 국가별 총 연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b>① 모임·행사</b>	
사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b></li> <li>·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이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li> <li>- <b>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b></li> </ul>
기타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식 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li> <li>·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li> <li>▶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li> </ul>
<b>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b>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 <b>집합금지</b>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b>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b></li> <li>▶ <b>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b></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b></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li>▶ <b>교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b></li> </ul>
실내 스탠딩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b></li> </ul>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b></li> <li>▶ <b>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b></li> <li>▶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공용집계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홀덤펍	▶ <b>집합금지</b>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실내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b></li> <li>· 중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li> <li>▶ <b>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b></li> <li>▶ <b>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b></li> <li>▶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b></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b>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b></li> <li>▶ <b>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b></li> <li>▶ <b>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b></li> <li>▶ <b>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b></li> <li>▶ <b>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b></li> <li>▶ <b>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b></li> <li>▶ <b>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b></li> </ul>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b></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li>▶ <b>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b></li> <li>▶ <b>숙박시설 운영 금지</b></li> <li>·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li> </ul>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b></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결혼식당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b></li> </ul>
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li> </ul>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b>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b> ▶ <b>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b> ▶ <b>집객행사 금지</b> ▶ <b>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b>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b>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b>
숙박시설	▶ <b>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b> ▶ <b>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b> ▶ <b>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b> ▶ <b>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b> ▶ <b>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b>
파티룸	▶ <b>집합금지</b>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 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b>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b>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 적서 불드레(밀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b>① 모임·행사</b>	
사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b></li> <li>•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li> <li>-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li> </ul>
기타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li> <li>•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설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li> <li>▶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li> </ul>
<b>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b>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b></li> <li>▶ <b>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b></li> <li>▶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공용집계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홀덤편	▶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빙상장 분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b></li> <li>▶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li> <li>▶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li> <li>▶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li> <li>▶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체 권고</li> <li>▶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li> <li>▶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li> <li>▶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ul>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놀이공원·워터파크	▶ 단체로는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아·미용업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li> <li>▶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li> <li>▶ 집객행사 금지</li> <li>▶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li> </ul>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를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붙임 5 |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 (기본원칙)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부득이하게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

- ①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영상 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하기
- ② 외출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외부인 방문 자제
- ③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 ④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⑤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 불가피하게 이동할 때

- ▶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 증상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 ▶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 ▶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 ▶ 휴게소에서 사람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 ▶ 가급적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  
\* 좌석 예약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약
- ▶ 마스크 상시 착용, 대화는 자제
- ▶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간식 구입은 자제
- ▶ 흡연실, 화장실 줄 설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 기차·버스 등 안에서

- ▶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음식 섭취하지 않기
- ▶ 대화 및 전화 통화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대한 짧게 통화

### ○ 고향 집에서

#### 실천할 것

- ▶ 5인 이상 모임 금지
- ▶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 ▶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 ▶ 집안에서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 ▶ 직계가족만 만날 것을 권고
- ▶ 식사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 ▶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
- ▶ 하루에 3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 ▶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하기



**피할 것**

- ▶ 가족·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가지 않기
- ▶ 직계가족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 ▶ 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 튀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 성묘·봉안시설 등 방문할 때

**실천할 것**

- ▶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 ▶ 최소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 ▶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 출입할 때, 이동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두기

**피할 것**

- ▶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추모관 방문 등 하지 않기
- ▶ 영결기간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 ▶ 실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 귀경·귀가 후

- ▶ 귀가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
  - \* 귀가 후 열이나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모임·여행 할 때**

○ 여행 전

**실천할 것**

- ▶ 개인 또는 가족(동거가족) 등 소규모(5인 이상 모임은 금지)로 계획하여 여행하기
- ▶ 다중이용시설, 여행지 등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방문하기
  - 일정 및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하기
- ▶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하고, 차량 내 자주 접촉하는 표면 속도 후 충분한 환기하기
- ▶ 대중교통 및 관광지 입장권 예매와 발권은 온라인서비스 우선 활용하기
  - 좌석은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하기

**피할 것**

- ▶ 밀폐·밀집·밀접 장소는 가지 않기
- ▶ 필요한 간식·물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가급적 휴게소 들리지 않기
  - 휴게소 방문 시 가급적 짧은 시간동안 머무르기

○ 여행 중

**실천할 것**

- ▶ 자주 손 씻기
- ▶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피할 수 있도록 동선 최소화
- ▶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 ▶ 실내, 교통수단 내에서 꼭 필요한 통화는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작은 목소리로 하기
- ▶ 휴게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포장·배달 활용)
- ▶ 주문, 예매 등은 가능한 무인기계 사용, 타인과 대면 시 손소독제 사용
- ▶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피할 것**

- ▶ 밀폐·밀집·밀접하기 쉽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는 가지 않기
- ▶ 불가피하게 방문 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붙임 6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비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야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류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반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인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은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만,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은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제양을 불고 온 메르스(중등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 “공기업 역할하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아셈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과력 메르스 '1000배' ...중동독감 유입 땀 대제양”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발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법 제18조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